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7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 안상훈 · 권영세 · 고동진

박충권 • 박성훈 • 최수진

배준영 • 백종헌 • 신동욱

한지아 · 이인선 · 강대식

김미애 의원(13인)

제안이유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 종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
 발·보급 및 개선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투자조합, 금융지원기관에 대한 출자 등 금융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고시한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정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 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사회서비스 이용자"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사회서비스 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4.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전문성·투명성·창의성·다양성 등 (이하 "공공성 등"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 9.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방안
 - 10.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①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

- 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연구·개발 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5.. 제1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인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2.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시책

- 제9조(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보급 및 개선(이하 "개발·보급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개발·보급등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서비스 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 · 기술개발 지원
 -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개발·보급등을 위한 협약
 -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 2.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침해 예방 및 대응
- 3. 권익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
-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역량 강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 홍보 및 연구
 - 2.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예방 및 구제
 -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금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2.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지원 대상·방법·규모·성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 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 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 분을 취득한 자
 - 2. 제1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4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제17조(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정 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하여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서비

- 스 제공기관에 교육을 제공하는 등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사회서비스 제공기 관의 지도·감독, 지원 수준, 등록·신고·지정 등에 관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8조(품질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안 정성·신뢰성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인정(이하 "품질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인정 수행기관 으로 지정하여 품질인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과 그 신청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인정서와 인정마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정을 받은 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 한다)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홍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품질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정서 또는 인정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품질인정을 받은 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평가 면제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인정을 받거나 인정절차를 진행 중인 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 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질 평가
 -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평가
 -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평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장의 장이 협의한 평가
- 제21조(인정의 유효기간) ① 품질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의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22조(품질인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폐업을 하거나 인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 6. 그 밖에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이 취소된 자는 품질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품질인정을 받을 수 없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품질인정을 취소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

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제25조에 따른 대국민포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4조(지도와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 공기관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

-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수수료)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 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 여야 한다.
- 제2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조사·연구, 인력 통계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 업무
- 2. 제13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업무
- 3. 제23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 각 호,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정을 받은 자
 -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정서 또는 인정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품질인정을 받은 기관임을 사칭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